

##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보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)	전화번호
영업소	명칭 또는 상호	영업신고번호
	소재지	
변경품목	제품명	품목보고번호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제품명		
원료·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	뒤쪽에 기재	
변경사유		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품목제조보고서 사본
------	------------

(변경 원료·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)

변경 전			변경 후		
번호	원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번호	원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		
2			2		
3			3		
4			4		
5			5		
6			6		
7			7		
8			8		
9			9		
10			10		
11			11		
12			12		
13			13		
14			14		
15			15		
16			16		
17			17		
18			18		
19			19		
20			20		
21			21		
22			22		
23			23		
24			24		
25			25		

유의사항

1.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2. 배합비를 표시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